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GS건설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공사 현장 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12.21.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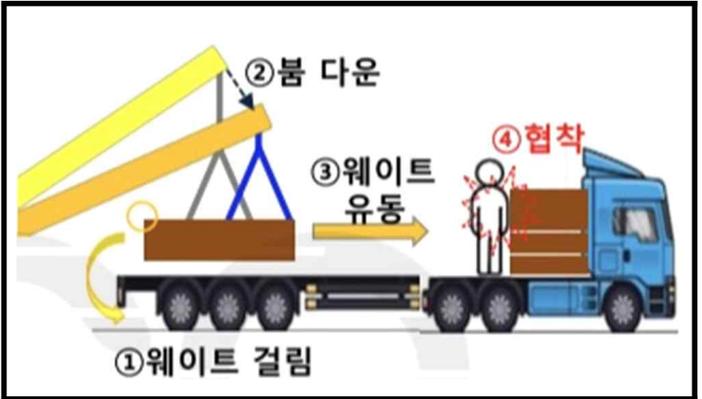
□ **시공사** : 지에스건설(주)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 공사금액 : 855억원
- 공사기간 : 2019.09.17 ~ 2023.05.31. [공정률: 78.6%]

□ **재해내용**

'22.12.15(목) 13시45분경 P17 코핑폼 거치용 하이드로 크레인(220T)을 웨이트(무게추)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걸림이 발생하였으며, 걸린 웨이트를 빼내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던 순간 걸림 부위가 빠지면서 웨이트가 스윙하여 적재함에 있던 운전원이 기 상차한 웨이트와 유동한 웨이트 사이에 끼임(병원 치료중 12.21 사망)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72세, 트레일러 운전원)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의 소통 미흡
- ▷ 트레일러 운전원(일회성 출입자)의 대기 위치 불량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하이드로 크레인을 활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전 신호수, 운전원 등에 대한 교육[작업계획 및 안전수칙 공유]을 철저히 시행
- ▷ 상기 사고 사례처럼 본 작업이 아닌 부속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트레일러 운전원 등 일회성 출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

■ 언론 보도자료(연합뉴스 외)

시흥 건설현장서 70대 근로자 끼임사...GS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건설 근로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에 있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72) 씨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GS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GS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